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 [국토교통부령 제504호, 2018.4.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서는 공용면적 등이 제외되나,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으로 분류되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2세대 이상이 공  
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의 면적을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문

#### ○ 국토교통부령 제504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  
적도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